

202.25호

### 행정명령

#### 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

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제202호 행정명령(Executive Order)을 발령함에 따라,

뉴욕주에서 코로나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 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

따라서 오늘 저 Andrew M. Cuomo 주지사는 주 비상시 법률, 조례의 특정 조항, 명령,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,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,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, 그러한 조항을 일시 정지 또는 수정시키기 위해 행정부법(Executive Law) 제2-B조 제29-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, 다음 법률을 본 행정명령일부터 2020년 5월 29일 금요일까지 일시 정지 또는 개정합니다.

- 현재 면허를 받아 운영되는 출산 병원의 출생지 및 현재 면허를 받아 운영되는 출산 센터에 대한 보건 커미셔너의 승인과 인증을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뉴욕법(New York Codes, Rules, and Regulations, NYCRR) 10장 401.3항 및 710.1항 및 NYCRR 710.1항 세부조항 (a) 및 (e), NYCRR 709부 및 710부 및 기타 적용 가능한 규정.

또한, 행정부법 2-B조의 제29-a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, 이번 행정명령 일자로부터 2020년 5월 29일 금요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발행합니다.

- 행정 명령 202.13호 및 202.12호에 포함 된 출산 환자에 대한 지원 담당자 관련 지침은 이로써 모든 28조 시설이 면허 유지의 조건으로써 모든 출산자와 다음의 사람의 동석 허용을 요구하도록 개정됩니다. 이에 해당되는 자는 코로나19 증상이 없으며 진통 및 출산 과정 및 환자의 입원 기간 동안 환자를 지원하는 자 및/또는 코로나19 증상이 없으며 진통, 출산, 환자의 입원 기간 동안 환자를 지원할 조산사 등입니다. 지원자 및/또는 조산사는 커미셔너가 결정한 의료적 필요의 예외 적용 대상이 됩니다.
- 행정 명령 202.10호에 포함되어 보건 커미셔너가 모든 일반 병원, 외래 수술 센터, 사무실 기반 수술 관행 및 진단 및 치료 센터에 모든 선택적 수술 및 치료를 취소하는 등 환자를 수용할 병상의 수를 늘리도록 지시할 권한을 부여하는 지침은 이에 일반 병원에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택적 수술 및 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만 개정됩니다. 한 카운티 내에서 가능한 총 입원 환자 대응수가 30 퍼센트를 넘고 대응 가능한 총 병원 중환자실(ICU) 대능 가능 인원은 30 퍼센트 이상이며 2020년 4월 17일부터 2020년 4월 27일까지, 코로나19 확진 입원 환자의 수가 열 명 미만인 경우, 카운티 내의 각 병원이 자격 조건을 만족하고 가능한 총 입원 환자 대응수가 30 퍼센트를 넘고 대응 가능한 총 병원 중환자실 대능 가능 인원은 30 퍼센트 이상이며 2020년 4월 17일부터 2020년 4월 27일까지, 코로나19 확진 입원 환자의 수가 열 명 미만인 경우. 보건 커미셔너는 이러한 기준의 이행과 관련하여 지침을 발행할 권한이 있습니다. 선택적 수술 및 치료를 시행할 권한이 있는 일반 병원은 최소한 수술 및 치료의 종류와 수를 커미셔너가 지정한 방법으로 보건부(Department of Health)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. 본 지침에 포함된 선택적 수술 및

치료를 시행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일반 병원은 최소한 시설 가용량, 물리적 구성, 전염병 프로토콜 및 인력 배치 능력을 포함하는 계획을 보건 커미셔너가 지정한 방법으로 보건부에 제출하여 금지 조항에 대한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계획에는 이러한 시설이 선택적 수술 또는 치료를 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 해고 등 인력 감축을 포함한 고용 상의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정보 또는 이러한 시설이 선택적 수술 또는 치료를 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발생한 일시 해고 등 인력 감축 등이 포함됩니다. 일반 병원은 해당 환자가 승인된 진단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음성으로 판정받기 전까지 모든 선택적 수술 또는 치료를 시행해서는 안되며, 병원과 환자는 수술 및 치료를 시작하기 전 커미셔너가 지정한 방법으로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.

2020년 4월 29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

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

선포합니다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